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51호 2022. 2. 24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훈 령

- 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(예천군 훈령 제437호)

공 고

- 공인 신조 및 등록 공고(예천군의회 공고 제2022-2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2년 2월 2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훈령 제437호

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예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90일 이내에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약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있으며,”를 “있으며,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공약사업 및 공약실천계획 확정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공약추진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공약사업 확정기한(취임 후 90일 이내) 명시(제3조제4항)

나.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기한(취임 후 180일 이내) 명시(제4조제2항)

공인 신조 및 등록 공고

예천군의회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공인 신조 및 등록(교부)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신조 및 등록사유 : 예천군의회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조
2. 사용개시일 : 2022. 2. 24.
3. 공인내역

구 분	공 인 명	서체 및 규격	인 영
신 조	예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	훈민정음체 2.0cm × 2.0cm (정사각형)	

2022. 2. 24.

예 천 군 의 회 의 장